

2026년 제1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년인턴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공고

2026년 제1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년인턴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1.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명단

최종합격자(13명)

지원코드(분야)	선발인원	응시번호 성명(번호순)	
부산청01(행정)	4명	부산청01-03 최○서	부산청01-09 변○현
		부산청01-21 박○정	부산청01-23 임○인
부산청02(해양)	3명	부산청02-03 송○우	부산청02-04 이○석
		부산청02-05 구○주	-
부산청03(행정)	1명	부산청03-10 주○준	-
부산청04(행정)	1명	부산청04-01 조○령	-
부산청05(행정)	1명	부산청05-05 이○서	-
부산청06(항만)	2명	부산청06-02 이○운	부산청06-05 차○민
부산청07(행정)	1명	부산청07-02 김○은	-

예비합격자(7명)

지원코드(분야)	순위	응시번호 성명
부산청01(행정)	1	부산청01-29 허○현
	2	부산청01-11 김○진
	3	부산청01-19 진○화
부산청02(해양)	1	부산청02-02 박○희
부산청04(행정)	1	부산청04-02 송○영
부산청05(행정)	1	부산청05-01 박○순
	2	부산청05-06 손○은

2. 합격자 제출서류 및 근로계약 일정

□ 제출대상 : 최종합격자(13명)

□ 최종합격자 사전제출 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 ② 증명사진 파일
- ③ 급여통장 사본 1부
- ④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서식1) 1부
- ⑤ 서약서(서식2) 1부

□ 제출 방법 : 청년인재 DB로 제출

▶ 제출기한 : 4. 20.(월) 18:00까지

□ 근로계약 예정일 및 출근일 : 2026. 5. 6.(수) 09시까지

- 부산청01·02·03·04·05·06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본관2층 소회의실로 출근
- 부산청07 : 제주해양수산관리단 2층 운영지원팀 사무실로 출근

□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는 상기 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바라며, 채용 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채용(계약)포기서 【서식3】 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기한 내 채용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에도 채용포기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채용등록, 채용포기, 계약절차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채용 담당자, ☎051-609-6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2】

채용후보자 등록원서

2026년 제1차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년인턴 채용시험				
성 명	채용직종	응시번호	선발기관	사진파일 (3×4)
	청년인턴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병역관계	<input type="checkbox"/> 병역필 <input type="checkbox"/> 면제 <input type="checkbox"/> 미필 <input type="checkbox"/> 여성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제대연월일:
현 주소	우편번호 :		집(직장)	
	주 소:		휴대폰	
			이메일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세부내용
		고등학교		년 졸업
		대학(교)		학과 년 졸업
		대학원		학과 년 졸업
경 력	근무지	기 간	직 위	발령청

자격.면허	년월일	종 별	시행기관	상별	년월일	종 별	시행기관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비상 연락처	관 계	성 명	나 이	현주소	연락처

위 본인은 시험응시 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채용후보자로서 등록하고자 출원합니다.

2026. 4. .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서식2】

서약서

본인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한 청년인턴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채용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 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로 채용권자가 지정하는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만일 이를 숨기거나, 허위 서류의 제출,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언제든지 합격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4월 일

서약자 성명: (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